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김민전 · 김정재 · 서천호
김용태 · 인요한 · 최수진
장민국 · 이양수 · 김선교
김상훈 · 배준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·위생·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,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.

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,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,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, 교육환경보호구역 내

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,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).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명할 수 있다”를 “명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합동단속의 실시)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단속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관계행정 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제9 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(제9 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의 중지·제한, 영업의 정지 및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거 부·취소 등의 조치(이하 “처 분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 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를 명할 수 있다.	제10조(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명하여야 한다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어야
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 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「행정대집행법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있다.

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· ⑤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· ② (생략)

<신설>

한다.

③ -----

요청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합동단속의 실시) ①

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행위 또는 시설을 단속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감은 제10조의2제1항에

③ · ④ (생 략)	<u>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합 동단속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 개하여야 한다.</u> 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-